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22. 1. 28.>

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[ ] 휴업 [ ] 재개업 [ ] 폐업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5일

신고인	상호	
	대표자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
등록번호 및 등록일	

신고내용	휴업예정기간 . . . ~ . . .(년 월)
	재개업일 . . .
	폐업일 . . .
	휴업·폐업 사유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(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면심사	→	기안·결재	→	등록결과 통보
신고인		처리기관 (시·도)		처리기관 (시·도)		처리기관 (시·도)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